

의안  
번호

379

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2.

전문위원 김 동 성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379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### 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출자·출연기관 중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(안 제3조)

- 다.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(안 제4조)
- 라.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(안 제5조)
- 마.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련 구청장의 지도·감독(안 제6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정보원법」,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,  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입법예고
  - 기 간 : 2024. 09. 19. ~ 2024. 10. 10.
  -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<sup>1)</sup>과 성북구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총 6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,
- 안 제3조는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성북구가 출자·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명시하였음.
- 안 제4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에 대한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의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,
- 안 제5조는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하고,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,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, 사이버보안 교육, 자체진단 및 점검, 보안관제, 사고 대응 등을 하도록 명시함.
-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·감독하도록 규정함.

1)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

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4. 3. 5.>  
(생략)

2의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성북구 출자·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와 사이버 공격·위협에 대한 예방·대응 및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다만, 조례의 약칭은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사용하되 목적 조항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바, 안 제1조 목적 조항에 둔 약칭을 삭제하고, 안 제3조에서 1회 사용되는 해당 용어(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)에 대해 약칭을 두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함.

〈수정안〉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)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설립하고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	제3조(출자·출연기관의 범위)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호의2--- ----- ----- -----.